

## 2026년도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기연구원 지원사업 추가 공고

「2026년도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기연구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5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 경 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구 자 균

### 1. 사업목적

- 중소기업과 시니어 과학기술인을 매칭하여 해당 기업 기술개발\* 수행 지원  
\* 기업의 기술애로 분야와 특성에 따라 공정개선, 시험검증 및 기술개발 등 수행

### 2. 사업내용

- 지원내용 :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이 시니어 과학기술인을 단기연구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 신규 11개 과제 내외
- 지원금액 : 정부지원금 월 200만원, 기업부담금 월 최소 100만원

| 지원규모       | 지원내역                                       | 지원기간             | 비 고           |
|------------|--------------------------------------------|------------------|---------------|
| 11개 과제 내외* | 정부지원금<br>월 200만원,<br>기업부담금<br>월 최소 100만원** | 협약일로부터<br>5개월 이내 | 4대보험 가입 필요*** |

- \*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 근무시간(주 20시간 이상 근무 필수)과 근로조건 등은 '기업(사용자)-근로자' 간의 계약에 따르며 기업매칭(부담) 금액은 상향 가능
- \*\*\* 4대보험 기업(사용자) 부담분은 월급여와 별도로 기업에서 부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및 소득세 등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월급여에서 공제

### 3. 신청자격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시니어 과학기술인)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 10년 이상인 퇴직\*\*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 본 사업 계약 전 퇴직할 예정인 경우도 포함

#### <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법인
    -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경력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우대사항

- 지방소재 중소기업(본사 기준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성과 공유기업 확인 기업

4. 신청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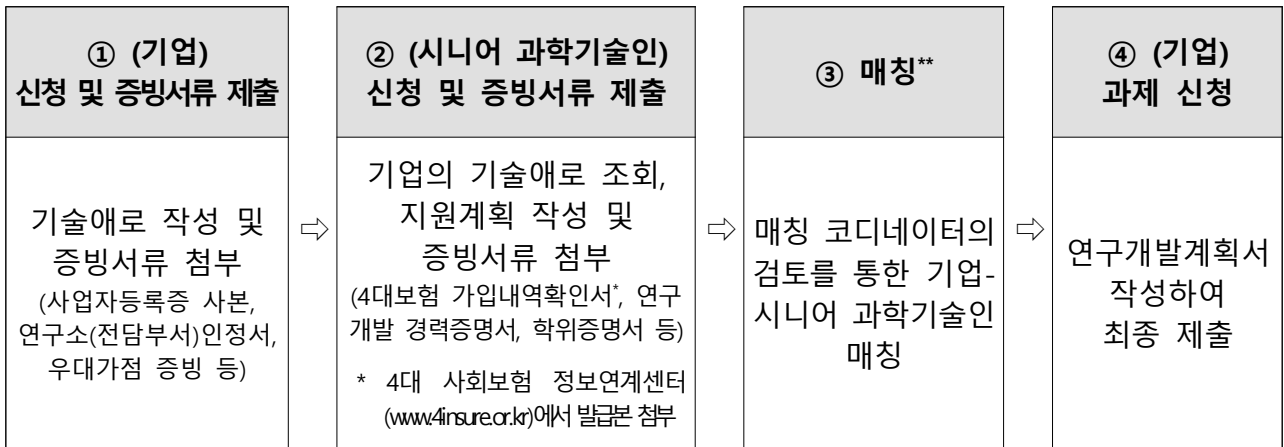
○ 접수기간 : 2026. 6. 15. ~ 2026. 7. 15.

○ 신청방법 : ReSEAT 홈페이지(www.reseat.or.kr) 온라인 과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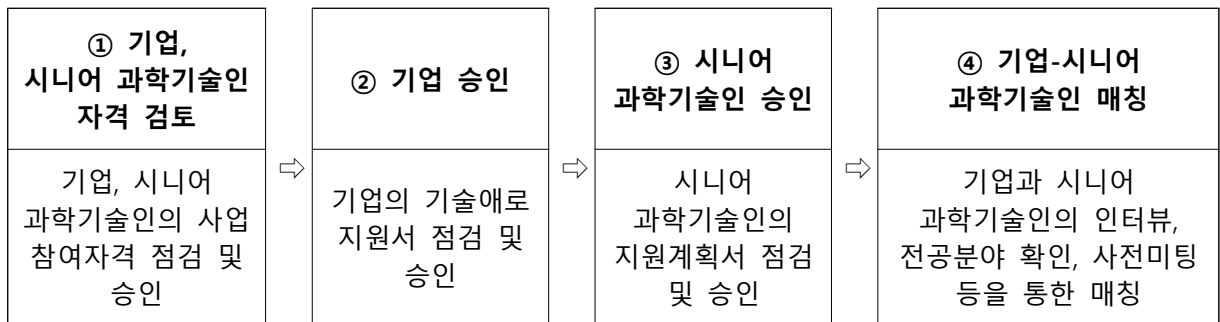
※ ReSEAT 홈페이지(www.reseat.or.kr) 회원가입 완료 후 과제 신청

※ 매칭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 접수 필요(문의 : 02-3460-9064, 9038)

○ 신청절차 및 방법



\*\* 매칭방법(매칭 코디네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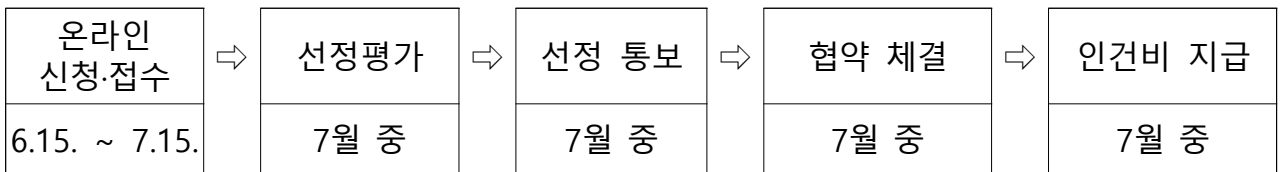


○ 제출서류 : 모든 파일은 ReSEAT 홈페이지 온라인 입력 및 첨부

| 서류명                                    | 비고   |
|----------------------------------------|------|
| <b>기업 신청 시</b> ※ ReSEAT 홈페이지 참고        |      |
| 기술애로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증빙서류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 증빙서류 |
| <b>시니어 과학기술인 신청 시</b> ※ ReSEAT 홈페이지 참고 |      |
| 지원계획                                   |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증빙서류 |
| 석, 박사 학위증명서                            | 증빙서류 |
| 연구개발경력증명서                              | 증빙서류 |
| <b>과제 신청 시</b>                         |      |
| 사업 신청서                                 | 붙임1  |
|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2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붙임3  |
| 참여자격 확인서                               | 붙임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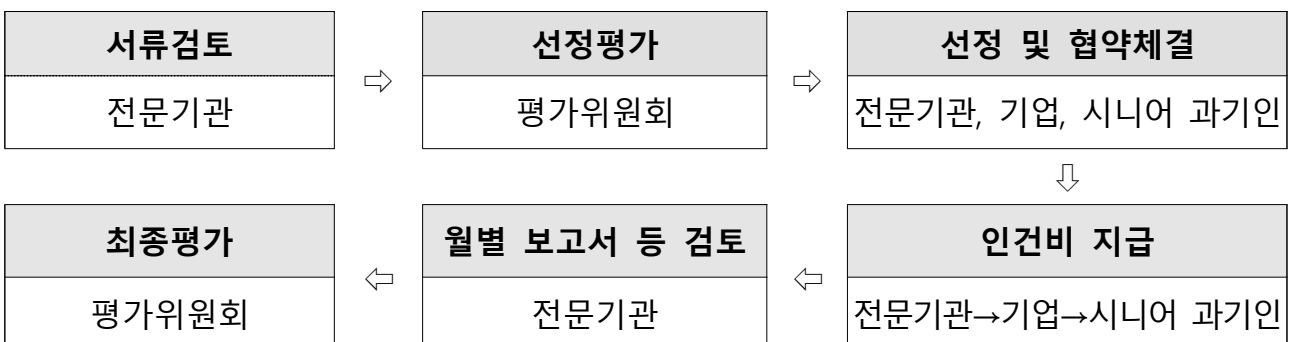
## 5.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절차



○ 평가기준

| 구분(배점)          | 평가지표                                    |
|-----------------|-----------------------------------------|
| 기업부문<br>(50점)   | 사업지원의 필요성(20점)                          |
|                 | 활용방안, 기대효과, 인력 처우(30점)                  |
| 인력부문<br>(50점)   | 지원인력의 역량(전문분야, 경력, 실적 등), 지원계획 부합성(20점) |
|                 | 연구개발과제 내용 및 기술애로 해결 가능성(30점)            |
| 우대사항<br>(최대 5점) | 지방소재 중소기업(본사 기준 서울, 경기, 인천 제외)(3점)      |
|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2점)                         |

\* 성과공유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근로자와 성과를 함께 나누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서 발급 가능

※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대상 제외

6.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

- 2025년도 시니어 과학기술인 경력이음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시니어 과학기술인 조합으로는 2026년 사업에 신청 불가
- 본 사업을 통한 인건비 지원은 기업당 총 2회까지 가능
- 신청 중소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해당 기업의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공고일 기준, 신청 중소기업에 기 채용된 인력 또는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인력은 본 사업에 신청 불가
- 중소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 공동 연구 지원사업과 중복 수행 불가

## 7. 유의사항

-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 시니어 과학기술인(지원인력) 변경불가
- 협약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평가 또는 협약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지원 제외 또는 협약 해약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

## 8.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락처: 02-3460-9066, 9063, 9068)

-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연구 개발 계획서 1부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4. 참여자격 확인서 1부 끝.